

2013.6.8. 시행 PC방 전면금연 관련 FAQ

1. 2013년 6월 8일 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기존에는 영업장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 6월 8일부터는 모든 PC방의 영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와 손님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PC방 업주는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PC방 출입구와 계단·화장실 및 영업장 내 주요 위치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PC방 이용자는 2013년 6월 8일 이후 PC방 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3. 개정된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PC방 업주가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PC방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C방 업주의 경우, 해당 업소 손님의 흡연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연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PC방 이용자 흡연시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대상	개정법에 따른 의무	위반시 과태료
PC방 업주	금연구역 지정·표시 의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PC방 이용자	금연구역내 흡연금지	10만원

4. 12월 말까지 PC방 전면금연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무엇인가요?

계도기간이란 법은 시행되었지만 새로운 제도의 적응을 위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단속하기보다는 바뀐 제도를 지도·안내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침)

정부에서는 계도기간(2013. 12. 31.까지)동안 가급적 단속 및 처벌보다는 안내·홍보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 PC방 업주는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 흡연실 설치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PC방 내에 흡연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흡연실 설치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PC방 업주가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참조

6.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금연/흡연구역 구분 칸막이는 철거해야 하나요?

당초 업주가 설치한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흡연구역이 없어지고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의 철거 여부는 업주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7. 영업장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소방설비 필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영업장 내에 이동 가능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안전시설 설치 및 신고가 불필요하나, 영업장 내에 흡연실을 별도 구획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되어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소방방재청 업무처리지침 참고 「PC방 등 전면 금연실시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13.4.29.」
따라서 흡연실 설치의 경우, 설치 구조·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